

소방안전관리 규정

제 1조 (목적) 본 규정은 호서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시설물의 방화관리업무를 철저히 하고 화재로부터 인적, 물적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방화관리 책임) ① 본 대학에는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자를 두며 각 실에는 화기책임자를 두고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책임자를 통솔한다. 또한 부속기관별로 소방안전관리 실무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임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다. (개정 2012. 9. 15)

② <삭제 2012. 9. 15>

제 3조 (임무) ① 소방안전관리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해의 소방계획서를 작성 비치하고 소화, 통보, 피난 등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 (개정 2012. 9. 15)

② 화기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소방계획에 의한 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.

2. 시설물 유지관리 및 청결을 철저히 하여 가연성물질이 방치되어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(개정 2012. 9. 15)

3. <삭제 2012. 9. 15>

4. 인화성 및 발화성물질 등 위험물질의 무단사용 또는 반입을 금하며, 학교에서 지급하지 않은 전열기구 및 가스기구 등 비인가 제품의 사용을 제한한다. (개정 2012. 9. 15)

5. <삭제 2012. 9. 15>

③ 경비근무자는 각 건물 내·외를 수시로 순찰하여 점검하고 그 이상 유무를 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. (개정 2012. 9. 15)

제 4조 (자위소방대 편성) 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를 편성·운영한다. (신설 2012. 9. 15)

② 자위소방대 편성은 사무처장을 대장으로 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부대장으로 하며, 각 분대의 편성은 소방계획서에 따른다. (개정 2012. 9. 15, 2015. 5. 1)

제 5조 (소방훈련과 교육) ① 본 대학 전 교직원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. (개정 2012. 9. 15)

②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에 의한 화재예방에 숙달할 수 있도록 한다. (개정 2012. 9. 15)

③ 소방훈련 및 교육은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실시되며,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협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한다. (개정 2012. 9. 15)

제 6조 (기타)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로서 본 규정에 정해 있지 않은 사항은 소방법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 (개정 2012. 9. 15)

부 칙

이 규정은 198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